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입주 기관 건축비 지원》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12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제220701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0조의2 신설)	2
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건축비 지원(안 제45조의2 신설)	7

I.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제220701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0조의2(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기업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u> <u>2.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u> <u>3.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u> <u>4.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기업도시¹⁾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현행법 제40조²⁾에는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민간기업 등이 주도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국가 내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기업도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관으로서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³⁾가 있음.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회의의 설립)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학·연(산·학·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며, 현재 지정된 기업도시 및 향후 추진 예정인 기업도시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 의견 또는 계획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직접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은 기업도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조성⁵⁾하는 기업도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참고 1] 기업도시 입주(예정) 기업 현황」 참조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한)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

시의 본질적인 특성, 기준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6) 외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⑤ (생략)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

기업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 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건축비 지원
(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한 시설 건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6조제2항⁷⁾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정안은 주민 생활 지원의 목적을 넘어 기업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비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지원 내용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⁸⁾와 혁신도시⁹⁾에 대해서도 해당 특별법에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유사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내 연구, 교육, 의료 기능 유치를 위해 현행법에 각종 특례¹⁰⁾가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아닌 개별 기관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건축비를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산업단지¹¹⁾, 경제자유구역¹²⁾, 도심융합특구¹³⁾ 등 타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74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 1

기업도시 입주(예정) 기업 현황

※ 국토교통부 제출

구 분		추진현황	
국 토 부 소 관	① 충 주	면적, 기간	700.9만㎡, 2007~2012년 (6,352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충주기업도시(주) 출자사 : 포스코건설, 글로웨이, LH, 현대엔지니어링, 동화약품 등
		도입시설	첨단산업연구단지, 물류센터, 종합레포츠시설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7.4), 착공('08.6), 준공('12.12) 분양율 : 99.5% 입주율 : 100%(23개사 입주완료)
	② 원 주	면적·기간	528만㎡, 2007~2019년 (10,459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원주기업도시(주), 출자사 : 롯데건설, 경남기업, 금강산업(주), 기은센엠에이치, IBK투자증권 등
		도입시설	첨단의료단지, 첨단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7.4), 착공('08.7), 준공('19.9), 청산('25.1) 분양율 : 100% 입주율 : 81%(52개사중 42개사 입주완료)
문 체 부 소 관	③ 태 안	면적·기간	1,546만㎡, 2006~2025년 (12,982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현대도시개발(주) 출자사 : 현대건설(주)
		도입시설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6.12), 착공('07.10), 공정률 : 60.9% 분양률 : 31.6% 입주율 : 45.3% (골프장 4, 골프장 지원시설, 관광숙박시설 2, 화훼보존 화센터, 한국타이어, 무인조종연구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수소튜브검사시설)
	④ 영 암 · 해 남	면적·기간	전체 3,390만㎡ (삼호지구) 865만㎡, 2009~2025 (5,534억원) (구성지구) 2,090만㎡, 2006~2025 (21,387억원) (삼포지구) 423만㎡, 2008~2028 (5,560억원)
		시행사, 출자사	(삼호지구) 시행사 : 서남해안레저(주), 공정률 : 20.5% 출자사 : 에이스투자, 한국관광공사, 전남도 등 (구성지구) 시행사 : 서남해안기업도시(주), 공정률 : 33.6% 출자사 :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보성산업(주), ㈜한양 등 (삼포지구) 시행사 : KAVO(주), 전남개발공사, 목포도시가스(주) 공정률 : 38.47% 출자사 : 목포도시가스(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
		도입시설	(삼호) 골프장, 콘도, 마리나, 리조트, 허브테마 등 (구성) 테마파크, 마리나,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삼포) F1경주장, 산업시설, 상업·업무시설, 문화, 복합시설 등
		추진현황	- 삼호지구 : 개발계획승인('09), 착공('14.7), 공유수면매립지 준공('18.4), 골프장(1개소, 63홀) 사용승인('19.10~'23.3) - 구성지구 : 개발계획승인('10), 공유수면매립준공('17.8), 1-2단계 준공('19.12,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1-3단계 준공('21.07, 골프장 외), 2-1단계 준공('23.10, 휴양3) - 삼포지구 : 개발계획승인('10), 1단계 F1경기장으로 사용 중 실시계획승인('25), 2단계 매립공사 추진 중

참고 2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비교

※ 국토교통부 제출

구 분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정주체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JDC 등은 민간기업과 협의 필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조세 감면	지원 대상	사업시행자	기업도시 내 창업·신설기업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 -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5년 과세이연, 5년 균납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감면	· 취득세 - 이전공공기관 : 50%감면 - 임직원(1세대1주택) · 85m2 이하 : 100%감면 · 85m2 ~102m2 : 75%감면 · 102m2 초과 : 62.5%감면 · 등록세 : 100% 감면 · 재산세 : 50%(5년) 감면
입지 지원	지원 사항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20%)		· 국유지 임대료 감면 (임대료 100% 이내) · 이전비용 일부지원 (이차보전, 2%, 3년간)
기반 시설	지원 사항	· 진입도로 건설비의 50%		· 주진입도로 1개소 100% · 광역상수도 30%(수공 70%) · 지방상수도 100%
규제특례		· 외국교육기관설립 허용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150% 범위 내 완화		·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우선지정 · 외국인 교원임용
지원센터 운영		×		○